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139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1997년 10월 28일
발의자 : 박정호의원의외 7인

1. 개정사유

- '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·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.

2. 주요골자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'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은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그 위원의 정수는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

나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